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817호 2022. 6. 29.(수) 수시분

선	기관의 장
람	

【규 칙】	
제631호 공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3
【훈 령】	
제309호 공주시 방첩업무규정	5
【고 시】	
제2022-119호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행자 위탁 고시	14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시민소통담당관실 ☎ 041-840-8323)

《시보발행안내》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 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정기발행 또는 수시 발행되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발행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

보급(배부)은 공주시 본청 모든 부서 및 산하 행정기관과 공주시 의회에 전자시보를 원칙으로 공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급(배부)됩니다.

상기 보급대상기관은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일반인의 열람 요청 시 게재내용을 열람시키거나 출력하여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7회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2022. 6. 8.)
에서 의결된 공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정섭

2022년 6월 29일

공주시 규칙 제631호

공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연장자순으로 한다.”를 “추첨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공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 우선 순위(제5조 관련)에서 순위4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유공자 또는 유족 중 1인에 한함)으로서 택시 또는 사업용자동차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별표] 공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 우선 순위(제5조 관련)에서 순위5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용자동차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및 경찰청장(행정안전부장관)의 10년 이상 무사고 영년 표시장을 받은 자(다만, 동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된 개인 택시는 이 규칙에 의하여 면허된 것으로 본다.

공주시 방첩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김정섭

2022년 6월 29일

공주시 훈령 제309호

공주시 방첩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첩업무 규정」 및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공주시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2.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 적용한다.

제4조(방첩담당관) ① 총무(서무)업무 담당국장은 보임과 동시에 시의 방첩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첩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지침 제정·시행에 관한 업무
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각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
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소속기관·산하단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 방첩담당관은 담당관의 교체가 있거나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체지침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안업무 부서장을 경유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그 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

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충청남도를 경유하여 당해 국가정보원 지부로 알려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행사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

보원과 협의해야 한다.

제9조(방첩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구성원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방첩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공관원 등 접촉 신청서

접촉대상 외국공관원	성명		성별	
	국적		소속 (전화번호)	
	국내체류지 (전화번호)			
면담일시	년 월 일 ~		면담장소	
접촉목적				

년 월 일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외국공관원(정보기관 등) 접촉결과 보고서

접 외 국 공 관 원 촉	성 명		성 별	
	국 적		소 속 (전 화 번 호)	
	국 내 체 류 지 (전 화 번 호)			
면 담 일 시	년 월 일 ~		면 담 장 소	
접 촉 결 과	년 월 일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결과란에는 접촉시 나눈 대화중 주요내용을 기재하되 자료제공 요청, 특정현안에 대한 브리핑 요청, 과분한 선물·향응 제공 등 특이사항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 접촉 신청서

접촉대상	성 명			성 별	
	국 적			소 속 (연락처)	
	국내체류지 (연락처)			접촉 요청자	
접촉일시	월 일 : ~ :	장소		접촉 방법	
접촉목적 및 지원자료					

년 월 일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 고시 제2022 - 119호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행자 위탁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대하여 측량·조사 등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4일

공 주 시 장

1. 책임수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 지적재조사지구 명칭 : 화현1지구·구경천1지구·송곡1지구
3.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 위치	화현1지구	경천1지구	송곡1지구
	계룡면 화현리 2번지 일원	계룡면 경천리 1-1번지 일원	반포면 송곡리 6-5번지 일원
필지수/ 면적	790필지 / 742천㎡	1219필지 / 987천㎡	460필지 / 339천㎡

4. 위탁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041-840-84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